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32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이재강・이광희・이해민

임미애·김우영·김준형

박지원 • 박희승 • 정혜경

조계원 • 박지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그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반환이 완료된 구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불가능해져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발제 한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낙후된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이에 국토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13조).

법률 제 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2(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른 법
	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
	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
	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
	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
	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해
	<u>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① · ② (생 략)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여구
	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
	로 검토하여야 한다.